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하여

제12대 법과대 학생회, 제13대 총여학생회

목차

1. 인사말
2. 제정이유와 주요조항
3. 논문 및 사례
4. 가폭법 개괄도

● 법과대 학생회장 조성흠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법과대에서는 교양 특강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가정폭력 방지법입니다.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매를 맞고 자랍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사적인 일로 치부되며 법의 세계에서 외면 받아 왔습니다. 사회에 근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폭력을 정당화하며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폭력을 근절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폭력문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가정폭력방지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꼭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법의 근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의 시행은 국민들의 바른 인식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우리 현재의 가족형태와 사회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갑시다.

● 법과대학 학술부장 이상현 ●

올해 저희 법과대에서 준비한 교양특강은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것입니다.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법과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되새겨 보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며, 그동안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매맞는 아이들, 그리고 매맞는 아내들' 그 밖에 가정에서 학대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의미를 명백히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관념을 극복하고서 이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살아 있는 법, 그리고 이들 법이 실제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며,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과대의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법장님과 총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술부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내학대 !

- 집안 일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

I

우리는 TV 아침 방송이나 다큐, '그것이 알고싶다' 등의 프로에서 매달 아내의 사례를 자주 보아 왔다. 하지만 보통 그것은 우리 집·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집안 일을 확대시켜 그것이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는 아내 학대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특별한 가정에서만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만큼 아내 학대 문제는 아직까지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내 학대는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혼 여성 중 남편에게 맞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71%나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대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내 학대문제를 오히려 부인이 남편의 학대를 유발시켰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아내 학대의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는 가족주의 전통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었고, 또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의식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상담기관이나 병원, 나아가 법과 사회에 호소한다 하여도 그 심각성이 인정되고 보호치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남성과 여성의 권력배분이라는 사회적 맥락으로 파악해야 한다.

II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아내 학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 등의 용어들이 큰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면 '배우자 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중립적인 개념은 아내 학대 문제가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 배분이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을 모호케 하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스트 시각을 채택하여 아내 학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아내학대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학대의 대상이다. 아내학대의 대상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전 배우자, 동거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학대의 의미이다. 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행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폭력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학대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학대의 범위이다. 학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물리적인 행위, 용기의 사용, 성적 압력, 수치심과 언어적 비하 등 심리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넷째, 행위의 일회성 및 반복성이다. 아내 학대의 경우 일회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학대는 '배우자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의들로 아내학대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인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덮에 걸린 느낌 뿐 아니라 존엄성, 통제력, 안정의 상실'로 설명될 수 있다.

III

이제껏 우리는 아내학대를 말할 때 '부인이 때렸을 것'이었으니까 때린다'라는 것으로 학대를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학대의 실상을 보면 소위 '때맞을 것'이라고 지목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며, 때맞기 좋은 부인의 성격도 알고 보면 계속된 구타의 결과로 비롯어진 노예의 상태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에

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는, 남성의 잘못된 우월의식 즉 '마누라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 관념과 부인의 자포자기적인 패배 의식,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아내의 무력감, 남편에 대한 종속을 뜻해왔다. 이 때 가정문제는 제 3자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식, 기타 법제도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아내학대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순종과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아내학대의 문제는 아내 한 사람에게 심한 정신적, 성격적 질병을 일으켜 개인적인 파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파급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아내학대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심각성에 비해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학대받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시설과 정부차원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담기관이나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IV

학대받는 아내들은 순종과 복종을 강요받으며, 가해자를 떠나지 못한다.

학대받는 아내가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로서 공포감 때문이다. 둘째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셋째, 학대 받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고 아이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비롯되는 이유로서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보편적인 합리화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기가 맞을 것을 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피해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다. 일곱째, 전통적인 결혼관에 묶인 여성들이 이혼이라는 혁명적인 결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규범으로부터의 압력이 여성으로 하여금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더 나아가 학대 받는 여성이 떠나려고 결정한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사회적 편견, 제약들로 인해 여성이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주저하게 만든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학대의 진정한 희생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가정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이다. 여성은 집이라는 공간을 자신이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처음 폭력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폭력이 심해지면 그 폭력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게 된다. 즉, 남편의 폭력적 자아가 아닌, 남편의 여자친구나 시댁 식구들이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극히 미워하거나, 오히려 지극히 잘해주는 경우가 있다. 잘해주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식이다. 아내는 자식을 자기 편으로 만들며 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학대받는 아내는 늘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또다시 자신을 집에 묶어둘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V

이제껏 아내 학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집안 일로 치부되어, 학대받은 아내는 법적 보호도, 사회적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특히나 '맞을 것을 했다'라는 원인론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제 아내 학대는 그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아내 학대는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91-05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집안 일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1. 서론
2. 가정폭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틀
3.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 가정폭력의 실태
5. 부부폭력의 특성
6.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7. 남편의 아내폭력의 발생원인
8. 가정폭력의 대책

김익기 · 심영희 · 박선미 · 김혜선 / 크라운판/220쪽/92.5/7,000원

▶ 제1장 서론

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2.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은 대인간 폭력의 한 범주를 일컫는 것이다. 즉 폭력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폭력을 일컫는 것이다. 현재 부부사이, 부모(중조부모)와 자식사이, (친)형제간에 발생한 폭력이 가정폭력의 범주로서 연구되고 있다.
3. 가정폭력은 일반대인폭력과 관련되는 특성 뿐 아니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가정내 폭력의 사회화가 거리에서의 폭력행위 등 일반대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일반대인폭력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반대인폭력과는 달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발생요인인 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인 점, 다른 폭력에 비해 사회에서 용인되는 폭력인 점 등은 가정폭력의 특수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폭력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측정을 위해 8가지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였는데, 1)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위, 3) 뺨을 때리는 행위, 4) 발이나 주먹으로 한 두대 때리는 행위, 5) 몽둥이같은 물건으로 때릴려고 하거나 한 두대 때리는 행위, 6)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는 행위, 7)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8) 칼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 제2 장 가정폭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틀

1. 가정폭력 연구는 크게 두가지 접근으로 시도되어 왔는데, 하나는 폭력의 직접적, 단선적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을 유발시키는 이와 같은 선행적 원인 뿐 아니라, 가정내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혹은 상습하여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체계이론적 접근이다. 직접적, 원인적 접근은 개인의 본능, 타고난 생물학적 욕망, 심리적 좌절과 같은 심리적 현상과 법적 제도,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화, 부부사이의 권력관계와 같은 사회구조적 조건들을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체계이론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 가족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가정내에서 폭력이 어떻게 유형화된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가지 접근을 참작하여, 개인의 폭력의 사회화 및 폭력과 관련한 태도, 그리고 부부관계적 요인에 입각하여 가정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왜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 제3장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 변수의 측정,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연구를 기초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spss-pc+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기혼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1,200명(여자 640명, 남자 560명)의 표본을 선정하였고, 모집단의 연령, 성, 직업의 비율에 따라 1,200표본이 배정되었다.
3. 본 조사의 표본집단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560명으로 46.7%, 여자가 640명으로 53.3%에 해당한다. 나이별로는 20대가 21.3%, 30대가 32.8%, 40대가 24.1%, 50대 이상이 21.8%이고, 결혼상태로는 유배우 기혼이 96.1%로 가장 많으며, 결혼기간은 10년 이하가 45.1%, 11년-20년이 하가 26.0%, 21년 이상이 29.0%이다. 성장지별로는 농어촌 출신이 42.9%로 가장 많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30.0%로 가장 많다. 학력은 고졸이 50.6%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남자의 경우 서비스(자영)가 38.4%, 여자의 경우 전업주부가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상층이 9.3%, 중층이 60.1%, 하층이 3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4장 가정폭력의 실태

1. 본 장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가족원들간의 폭력,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부부간의 폭력경험은 기타 다른 가정폭력이나 일반대인폭력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폭력경험간의 비교를 하고 있다.
2. 응답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정내에서 부모와 형제로부터 평균 13.3회 정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평균 10.4회 정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8.9%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와 형제로부터 당한 폭력경험과 가정밖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폭력경험을 비교해보면, 응답자들은 가정밖의 일반인으로부터 보다는 가정내의 부모와 형제로부터 평균 2.9회 정도 더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응답자의 폭력경험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응답자들이 여성응답자들 보다 부모와 형제로부터는 평균 5.4회, 가정밖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평균 11.3회 정도 더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응답자에 한하여 폭력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성응답자들은 부모와 형제로부터는 평균 10.8회 정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남편으로부터는 평균 4.8회 정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평균 4.4회 정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은 가정밖의 일반사람들로부터 보다는 가정내의 가족들로부터, 가정내에서는 남편 보다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난 일년(90년 7월 - 91년 6월) 동안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 1,171가구 중에서 '물건을 부인을 향해 던진' 행위는 156가구(13.2%), '부인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행위는 212가구(18.1%), '부인의 뺨을 때린' 행위는 134가구(11.4%), '발이나 주먹으로 부인을 한 두대 때린' 행위는 112가구(9.6%), '몸동이 같은 물건으로 때릴려고 하거나 한 두대 때린' 행위는 37가구(3.2%), '부인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때리는' 행위는 22가구(1.9%),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에게 위협하는' 행위는 18가구(1.6%), '칼같은 위험한 물건을 부인에게 직접 사용한' 행위는 6가구(0.6%)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8가지 폭력유형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발생한 가구는 332가구(2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난 일년(90년 7월 - 91년 6월) 동안 1,171가구 중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가구는 839가구(71.6%), '부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부터 뺨을 때리는' 행위까지 비교적 경한 폭력만이 발생한 가구는 209가구(17.8%), '발이나 주먹으로 한 두대 때리는' 행위부터 '칼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심한 폭력이 1-2회 정도 발생한 가구는 76가구(4.1%), 이러한 심한 폭력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가구는 47가구(4.1%)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지금까지 총결혼 기간동안 640명의 여성응답자들이 남편들로부터 어느 정도 폭력을 경험한 바 있는지를 보면, '손, 발, 주먹 및 몸동이 같은 물건으로 한 두대' 맞아 본 적이 있는 여성응답자는 290명(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닥치는 대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여성응답자는 58명(9.1%), '칼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응답자는 30명(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기간 중 이러한 남편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응답자는 293명(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지금까지 총결혼 기간동안 560명의 남성응답자들이 아내에게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보면, '손, 발, 주먹 및 몸동이 같은 물건으로 한 두대' 때린 적이 있는 남성응답자들은 281명(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닥치는 대로 두들겨' 때린 적이 있는 남성응답자는 49명(8.7%), '칼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폭력을 해본 적이 있는 남성응답자는 13명(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기간 중 이러한 폭력을 부인에게 한 번이라도 행사한 적이 있는 남성응답자는 283명(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지난 일년(90년 7월 - 91년 6월) 동안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보면, 1,171가구 중에서 '물건을 남편을 향해 던진' 행위는 82가구(7.0%), '남편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행위는 132가구(11.3%), '남편의 뺨을 때린' 행위는 31가구(2.6%), '발이나 주먹으로 남편을 한 두대 때린' 행위는 48가구(4.1%), '몸동이같은 물건으로 때릴려고 하거나 한 두대 때린' 행위는 16가구(1.4%), '닥치는 대로 두들겨 때리는' 행위는 6가구(0.5%),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남편을 위협한' 행위는 3가구(0.3%), '칼같은 위험한 물건을 남편에게 사용한' 행위는 1가구(0.1%)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폭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가구는 183가구(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지난 일년(90년 7월 - 91년 6월) 동안에 1,171가구에서 발생한 남편의 아내폭력과 아내의 남편폭력을 비교해보면, 위의 8가지 폭력유형에서 모두 남편에 의한 폭력이 아내에 의한 폭력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배우자를 향해 던지는' 행위를 남편이 아내에게 한 가구는 156가구, 아내가 남편에게 한 가구는 8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남편이 아내에게 한 가구는 18가구, 아내가 남편에게 한 가구는 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지난 일년(90년 7월 - 91년 6월) 동안 조사대상 1,171가구 중에서 부부 쌍방간의 폭력이 발생한 가구는 131가구(11.2%),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만이 발생한 가구는 201가구(17.2%),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만이 발생한 가구는 52가구(4.4%), 그리고 부부쌍방간의 어떠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은 가구는 787가구(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640명의 여성응답자 가운데 293명의 여성이 결혼이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이 경험여성들 중

에서, 남편의 폭력이 결혼 후 12개월안에 처음으로 발생한 여성은 109명,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직후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은 6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냥 맞고 있는 여성은 48명,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여성은 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린 적이 있는 여성은 92명, 상담기관에 알려 상담한 적이 있는 여성은 6명,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여성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6장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제6장에서는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아내폭력의 통념수용도 및 아내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에는 일반폭력과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 두 변인이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2. 아내폭력에 대한 통념 중,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1%가, 남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통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0%가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책임을 묻는 통념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을 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다른 종교보다는 불교인이, 그리고 결혼기간이 긴 응답자일 수록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따귀 때리기'라는 폭력유형을 선정해서 비교했을 때 일반인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폭력(7.8%)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9.3%)을 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의 여러 유형 중 밀치기(13.2%)를 가장 허용하는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물건던지기(6.1%), 뺨때리기(5.9%), 발이나 주먹으로 한두대 때리기(3.4%), 몸동으로 때리기(0.8%), 두들겨 때리기(0.7%)의 순으로 허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내폭력허용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을 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 보다는 없는 사람이, 농어촌 출신이, 결혼기간이 대체로 오래된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대인 폭력허용도, 성역할고정관념 수용도, 아내폭력 통념수용도가 높은 집단에서 아내폭력허용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마지막으로 이들 변수들의 관계와 영향력을 검토해 보았는데, 일반대인 폭력수용도보다는 성역할고정관념 수용도가 아내폭력 통념수용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아내폭력 허용도에는 성역할고정관념 수용도 보다는 일반대인 폭력허용도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고정관념수용도는 아내폭력통념수용도나 대일반인폭력허용도를 경유하여 아내폭력허용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내폭력 통념수용도는 아내폭력허용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 일반대인 폭력허용도, 성역할고정관념수용도, 아내폭력통념수용도 등으로 아내폭력허용도를 총 23%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7장 남편의 아내폭력의 발생원인

1. 이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 즉, 개인의 사회화 및 폭력과 관련한 태도, 부부갈등 정도 등을 통해 남편의 폭력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2. 어릴 적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한 남성일 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목격한 남성일 수록 부인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허용적인 태도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 남성일 수록 아내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또다른 원인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클 수록 남성은 부인에 대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의 폭력적 사회화 및 폭력과 관련한 태도, 그리고 부부갈등 정도로 남편의 폭력행동을 19%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8장 가정폭력의 대책

1. 가정폭력의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 및 폭력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및 형사사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적 대책 및 형사사법적 대책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1,187명의 응답자 가운데 453명(38.2%)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271명(22.8%)은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피난처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198명의 응답자 가운데 942명(78.6%)은 '아내에게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남편은 아내가 있는 집이나 직장에 어느 기간동안 접근을 못하게 명령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경과와 의의, 주요 법안 내용입니다.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가정폭력방지법은 94년 세계가정의해를 맞아 여성, 아동문제를 상담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추방주간' 행사를 치룬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96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96년 8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7년 10월 30일 8만5천여명의 서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자극받은 각당은 97년 하반기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모두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으며 97년 국회 법사위의 조정을 거쳐 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하게 되었다.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 1)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를 명시한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러한 인식전환은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또한 경찰의 초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

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 ①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 부터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응급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 ②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신고에 의한 것과 고소, 고발에 의한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어 즉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었다.
- ③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다. 그러나 불처분의 결정등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 보호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토록 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 ⑤ 가정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통제를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가능토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의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제5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폭력행위의 제제 및 범죄수사
-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 기간동안의 피해자 보호

제8조 (응급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대리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 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2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피해자의 진술권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명령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시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제 57조, 61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3)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치료보호를 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토록하고 있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바람직한 조치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후 신고율 2배 이상 증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최근 회지에 98년 9-11월 3개월에 걸쳐 면접을 통한 가정폭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상담소 본부와 전국 26개 지부에 가정폭력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 301명(여성 299명·남성 2명). 30-40대가 가장 많은 68.2%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중 가정폭력문제로 상담을 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응답자가 14.3%를 차지.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이 여전히 필요함을 암시했다. 반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가 38%로 법 시행 전 신고율의 2배 이상이 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줄어든 경우는 23%에 그친 반면, 가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심해진 경우는 72.5%에 달해 가해자의 고질화된 폭력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법의 효율적 운용, 특히 경찰의 적절한 개입이 절실함이 지적됐다. 응답자들 중 93.7%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과 법이 개입하는 것에 찬성했고, 가정폭력 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자도 85.4%였다. 뿐만 아니라 79.7%가 이웃의 가정폭력 발생시에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돼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결과 중간진단

"남편이 부순 물품피해는 신고대상이 아닌데 왜 불렀느냐" "웬 만 하면 들이 해결하거나 합의해라" "가정폭력방지법도 잘 모르겠고 상담자도 없다" "고소장 써서 정식절차 밟아라" "사람이 밖에 나와있지 않아 그냥 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갔을 뿐이다" "한번 더 그러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 7월 1일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과시적'인 사이렌만 한동안 울리다가 복귀해버린 경찰들의 웅색한 변명들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이 7월 1일부터 15일간 연합의 19개 지부와 1개 지회에 설치한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접수된 23건 사례들을 발표하고, 중간평가를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접수사례들을 통해 아직도 경찰들이 가정사건 개입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나마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 폭력남편에게 훈방조치한다는 것 정도. 서울여성의전화 신고센터 담당자 박은실 간사는 "아직도 경찰관 상당수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고정관념에 젖어있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점이다. 눈으로 직접 피해상황을 보고도 견딜만하다고까지 말하는 경찰도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신고센터 담당자들은 접수사건 처리로 담당경찰들과 통화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취지와 배경,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느라 말 그대로 "목이 설 정도"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문전달식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찰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든지 또는 민간 시민단체 위탁 차원에서든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반면 접수된 23건중 6건의 신고가 이웃이나 친지에 의한 것으로, 폭력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아졌다고 연합측은 해석한다. 연합이 7월 7일 평등에서 실시한 가정폭력방지법 홍보캠페인에서 조사한 서울시민의 의식수준도 이를 입증한다.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법이 이제야 나왔다"는 반응이 75.8%, "가정이나 이웃에 가정폭력이 있을 때 신고하겠다"는 반응이 95.5%, "가정폭력 현행법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가장 공감간다"는 반응이 72.3%나 됐다. 결국 인권수호에 대해 경찰이 좀 더 철저히 '배워' 익히기까지 시민들의 선진화된 공동체의식에 당분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측은 이를 고려해 한층 적극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제3자 신고 가능

법사위에 1년동안 계류중이던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 폐회 하루전인 11월 17일 전격 통과됐다. 앞으로는 가정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3자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됐으며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강제처분과 처벌을 받게 된다.

영유아보호법은 국회 폐회 마지막날인 18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아동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49년간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해온 국적법도 이날 개정됐다.

여성경제인지원법안과 남녀고용평등법안은 내년 1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한편,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대표 이미경 민주당의원)'이 일본 전범의 출입금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회 마지막날인 18일 통과됐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연구모임이 지난 10월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개정된 여성관련법안을 점검해 본다.

가정폭력방지법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 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상담소의 장 등 제3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 제지와 범죄 수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폭력행위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을 수사한 검사는 재발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에 피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처분,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 '강제처분'을 하게 된다. 또 판사는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명명, 보호관찰,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주요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영만필峙査寬?

기타 비영리법인이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부른 또 하나의 "존속살인"

폭력아버지를 살해하고 구속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여성계의 열기가 뜨겁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지난 5일 평소 술만 마시며 아내를 구타한 이상득씨를 살해한 26세 대학원생 아들 이모씨의 존속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로 보아 전혀 고의가 아니었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는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만연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이 사건은 당시 정황을 참작하고 평소 아들 이모씨의 행실을 최대한 반영해 판결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의 전화는 "전국 여성의 전화에서 탄원운동중인 10여건을 포함한 국내 가정폭력피해구속자, 수감자를 모두 석방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하려거나 폭력을 저지하려다 살인자가 된 경우인 만큼 사법당국은 살인자로 취급하지만 주변의 가족, 이웃, 심지어 사망자측 가족마저도 함께 이들을 지지하고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신고하겠다" 95.5%

한국여성의 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7일 명동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이 자리에서 만난 시민 2백81명을 상대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즉석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결과 응답 자 2백81명 가운데 75.8%가 "반드시 필요했던 법이 이제야 나왔다"고 답했으며 가정이나 이웃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95.5%가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장 찬성하는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현행법을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다' 72.3%, '가해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12.1%, '가해자에게 1백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8% 순으로 조사됐다.

[인터뷰]미국 가정폭력문제 전문가 마이클 맥그레인씨

미국 가정폭력문제 전문 상담가 마이클 맥그레인씨가 지난 5월 19일-20일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마련한 '구타하는 남성과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개입' 워크숍 강연자로 방한했다.

미네소타주 와일더 재단(Wilder Foundation) 지역사회복지관 관장인 맥그레인씨는 구타하는 남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정폭력으로 기소되는 남성들은 4명중에 한 명, 16초마다 한번씩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남성의 경우 90일간의 실형을 살거나 1주일에 한 번씩 16주동안 상담기관의 교정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며 2번 이상 빠지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구타하는 남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맥그레인씨는 16주 동안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폭력은 100% 습관이다. 폭력은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방법이 있다.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이 있다. 분개의 원인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마다 약 3-4백명이 교정프로그램을 마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상이 신체적 폭력을 멈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7-8 차례씩 구타 남편을 떠나려고 시도하지만 자녀 양육과 공포 등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안정한 심리 치료와 여성들이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새로운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맥그레인씨는 구타당하는 여성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카운슬러를 위한 지침서(Journey Beyond Abuse)를 지난해 공동 출간하기도 했다. "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입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긴장과 갈등을 폭력으로 분출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와일더 재단에서는 4살부터 8살까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맥그레인씨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 상담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 아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족, 사회복지 강화"

지난 12월 9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족복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17일 통과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18일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가정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숙자 교수(명지대 법학과)는 "가정폭력법의 제정목적은 가정폭력을 법적,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폭력가정을 해체하는 것 보다는 가정폭력의 방지 및 예방, 사후의 원만한 수습을 통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해석과 집행은 가족복지 내지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처벌'에 관한 별개의 법으로 제정된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었다"고 평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족복지와 사회복지의 확장이고 강화라는 점에서 김교수는 가정폭력을 배우자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 등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할 것을 제기했다.

아내에 대한 폭력 다음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로서 대두되는 아동학대는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 현실상, 실정법상의 여건으로 인하여 더욱 가정내에서 은폐되어 왔고 사적영역으로 방치되어 왔으며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지적발달이 미흡한 단계이므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성인보다 더욱 관심과 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폭력·폭행은 물론 감금,살인,부양거부,식사제공 거부 등 노인에 대한 가정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이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 가족간의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가족복지를 더욱 증진·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가정폭력특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첫째, 가정폭력문제 관련 전문가 양성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확보 셋째, 과거 가정폭력문제를 비폭력으로 보던 전통적인 국민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 위해 법전들고 뛰어오"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힘껏 뛰는 이들이 있다. 더구나 이 '만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끝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뛰려면 이들은 더욱 더 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다가오면서 더욱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성인권 변호사들. 이들은 여성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여성단체와 연계해 여성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왔다. 주로 여성문제 전문 상담

기관의 자문변호사 자격으로 위촉됐다. 현재는 작게는 5명부터 많게는 50 여명의 모임을 만들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인연을 맺은 동료변호사들의 권유에 의해 우연히 발을 디딘 경우가 많지만, 일단 활동을 시작하면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백인변호사단'을 구성해 가족문제 관련 민사소송을 지원해왔지만, 각 여성문제 전문상담기관에서 변호사단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95년 경부터다. 이후 얼마 안돼 97년 말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들의 조직적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20여년 구타당하다 남편 살해범인 이수남씨

1월 12일 새벽,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아내를 그야말로 '개 패듯' 구타하던 남편이 잠든 새 공포에 지친 아내가 그를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수남씨(44)는 10여 년 위인 남편 천모씨 살해범으로 사건 발생 당일로 구속됐다. 사흘이 멀다하고 행해지는 잦은 구타로 월세 방조차 갈 곳이 없어 삼송리 야산 밑 비닐하우스에 10년째 기거중이던 이씨는 이중 삼중의 생활고에 허덕이며 살아왔다. 알콜중독으로 밥벌이를 못하는 남편 대신 낚시판이를 해야 했고, 자고 깨고를 반복하며 쉼없이 구타하는 남편이 칼로 자신을 찔러 죽일까봐, 또 가스통을 폭파시켜 불을 지를까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살해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월 10일 남편이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흘 연속 심한 구타를 해 죽음의 위협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술하 2남2녀 중 아들 하나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는 생활고로 젖먹이일 때 보육원에 맡겨버린 이씨가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개가 해 친척집을 떠돌며 글자 하나 깨우치지 못한 자신의 삶이 아이들에게로 유전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들이라도 대신 죽일까봐 두려웠으며, 고3인 아들이 졸업하고 군대갈 때까지의 1년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한다고 담당변호사 최일숙씨는 전한다.

"검찰은 자가당착에서 벗어나라"

서울여성의전화는 구타아버지를 상해치사한 혐의로 재판중인 이정환군의 2월 5일 1심 검찰 구형제판(김영문 형사합의1부 담당검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군은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사건발생의 정상참작이 전혀 안된 판결이라는 것. 성명서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보다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 재판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피고는 성인으로서 집안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때문이다. 이 사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하는 판결을 내려선 안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여전 측은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이 가족사로 간주해 안이하게 대처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힐난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에 의해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때론아 운운하며 책임을 떠맡긴다고 비판했다. 서울여전측은 이런 검찰의 태도는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이군의 무죄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 필요/이영란

이영란/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성폭력범죄는 강압적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대인적 폭력행위로써 과거에 비하여 점점 죄질이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 발생률이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며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희롱과 어린이 성폭력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 역시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가정구성원에 대한 폭행·구타, 상해, 살인, 협박, 아동학대 또는 제물손괴와의 경합범 등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단도 역시 다양하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가정폭력이 연령이나 범죄수단, 주거환경 등의 변수보다 성별변수와 관계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여성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피해자가 압도적 다수이므로 주로 남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 피해자의 보호가 절실하다. 또한 가정폭력은 상습성의 정도가 높음이 실증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80.8%가 한달에 한 번 이상의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비교가 용이한 미국과 비교할 때 상습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처벌하고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헌법정신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범죄만연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형사처벌법규와 행정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두루 포함하는 특별한 형식의 법이다. 1994년 제정 이후 4차례의 개정에 의하여 많이 보완되고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몇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정의문제로써, 성폭속에 관한 죄인 음행매개죄, 음화 등의 반포, 제조 등 그리고 공연음란죄 등을 성폭력범죄로 볼 수 있는가이다. 또 미수범의 처벌을 위한 준용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최저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법정형을 더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 보호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성폭력특별법과는 달리 규율대상과 집행기관이 서로 다름을 감안하여 두 개의 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중한형사처벌과 불처벌의 중간적 제재인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가정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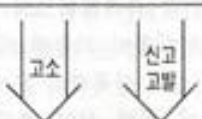
또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즉시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각종 절차적 권리와 민사구제절차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심도있는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어서,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일부에서는 회의적 시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의 개념에 유형력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보호처분의 절차상 소년법과 같은 검사선의주의의 타당성의 문제, 그리고 그재판권이 광범한 점, 보호처분의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외에 실제 형사재판과정에서 여성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성차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실도 발견된다. 윤락행위여성에 대한 높은 기소율, 강간범 남성에 대한 낮은 기소율, 청소년법규위반 소녀범들이 소년법보다 더 빈번히 교정, 교화시설에 보내지는 사실 등이다. 앞으로 국가는 폭력범죄방지라는 형사정책적 차원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차원에서 특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특별법 제정은 완전한 해결방법은 아닐지라도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법의 운용과 개선에 꾸준한 노력없이 부분적 해결기능마저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고 특히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촉구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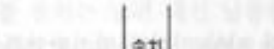
· 고소권자는 피해자, 그 법정 대리인은 물론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자도 가능 (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가정폭력범죄발생



수사기관 접수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여부 결정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

임시조치

·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의 격리 등 임시조치 (안 제29조 제1항)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이의 제기

항고

재항고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상해, 폭행, 유기 등에 해당하는 죄 (안 제2조)
· 아동의 교육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등 일정한 자에게 직무상 알게된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안 제4조 제2항 제3항)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각호의 조치를 취함 (안 제5호)
· 제발 우려시 임시조치 (안 제8조)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조사하여 검사에게 송치 (안 제7조)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

·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때 (안 제37조 제1항 제3호)

검사에 송치
(제37조 제2항)

· 불처분 결정 사유
·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때 (안 제37조 제1항 제1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안 제37조 제1항 제2호)
· 사건의 성질, 동기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안 제37조 제1항 제3호)

·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임시조치, 보호처분결정 (변경결정 포함)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현저히 부당한 때 (안 제49조 제1항)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불처분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 (안 제49조 제2항)

착한사람들의일터

출판기획 / 카다로그 / 포스터
신문 / 버튼 / 각종인쇄물

품질

작은 전단 하나도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품질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간

이제 시간에 쫓기어
포기하실 일은
없습니다.
한글나라기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가격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나라기획에서
여러분의 가격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EL : 2273-5946, 2273-5945
FAX : 2273-5945
ID : 나무누리 「한글신문」
E-mail : sinmun@nownuri.net.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8-5 삼인빌딩 201호